

제415회 국회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12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 국무위원 등 출석요구의 건(추가)
- 자료제출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	6
o 간사(김승원) 인사 .....	6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7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8
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	8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6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7
4. 국무위원 등 출석요구의 건 .....	27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7
5. 자료제출요구의 건 .....	27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명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정과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신 가운데 열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임위를 빨리 구성해 국민을 위한 입법에 힘써 달라는 국민적, 사회적 요구가 높고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 관례국가가 아닙니다. 관례로 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법사위는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총선 민의를 받드는 일입니다.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법무부, 검찰, 감사원,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소관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2대 법사위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국민으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사위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법사위 회의는 예정된 시간에 정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2대 국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잠시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또 선배·동료 여러분과 함께 22대 상반기 법사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임기 만료로 약 1600여 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그러한 것도 목도를 하였는데요 22대 총선에 반영된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정말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또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목표로 하는 만큼 법사위가 꼭 그 맨 앞줄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2년 만에 저도 법사위에 돌아오게 된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법사위가 안건 처리 등을 지연시키는 그런 상임위로 더 이상 인정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법사위 때문에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법사위 덕분에 국회가 정말 잘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법사위에 자주 와서 뒷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박균택 위원 광주 광산갑 박균택입니다.

평소 특별히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법사위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 그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그리고 통치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검찰 등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데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박지원 위원 오랜만에 법사위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19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사위를 했습니다.

그 법사위를 하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완이법도 만들어 통과시켰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도 만들었고, 이석수 감찰관도 추천하는 일들도 해 왔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에 와서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의 목숨값을 받아가는 그런 일은 없애 버리는 구하라법 제가 만들었고 꼭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에 왔습니다. 출생한 아이들이 엄마 없이 아빠 밑에서는 출생등록하지 못하는 미혼부의 출생등록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검사를 통치수단으로 사유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이곳 법사위에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님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들과 함께 법사위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그런 상임위원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인권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이런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또 인권과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국민의 명령을 이 법사위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이성윤 위원 반갑습니다.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과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과 함께 근무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검찰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사동일체가 사실상 존재하는 검찰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민심동일체가 되어서 국민들과 함께하고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과 무도한 검찰을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정말 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왜 법사위만 가면 그렇게 법들이 답답하게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많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시원한 법사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어찌 되었건 법을 지키는 상임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법사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 합의도 법을 지키지 않는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법사위원장께서 법을 잘 지키는 상임위로 잘 이끌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인사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박은정 위원님 뒤쪽의 언론인들 조금만 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계신데 조금 그럴 것 같아서요.

전현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전현희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심기경호를 하는 권력기관들과 일부의 부화뇌동하는 공직자들이 앞다투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 표적 감사를 겪었던 당사자고 또 목격자로 정권의 행동 대장격으로 전락한 감사원, 검찰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독립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훌륭한 장치인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위원으로 배정받게 되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들께서 국회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민생 파탄, 경제 폭망, 민주주의 위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권 여당이, 가장 책임이 있는 여당이 지난 2년간처럼 법사위에서 이를 가로막는다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가 정상화되어서 여야가 함께 법사위에 참여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존경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채 해병, 김건희 특검법 등 또 검찰과 감사원 개혁법 그리고 민생법안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과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완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치에 일절 뜻이 없던 제가 24년의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법사위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거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폭주하는 윤석열 검찰 정권을 바로 이곳에서 멈춰 세우겠습니다. 검찰을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재건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소개를 다 마쳤고요.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목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석현 전문위원입니다.

박동찬 전문위원입니다.

이화실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강혁 행정실장을 비롯한 입법조사관과 주무관들입니다.

다음은 파견 자문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에서 파견 나온 김신유 부장판사입니다.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신재홍 부장검사입니다.

### (인사)

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나온 남상규 헌법연구관을 소개할 차례입니다만 현재 공무 출장 중으로 부재 중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 후 고유법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출석과 자료제출 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간사 선임의 건

(14시15분)

○위원장 정청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승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김승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약간 혼동해서 얘기하시는군요, 제가 '김승원 위원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내에서 얘기할 때는 '위원' 이것이 공식 명칭으로, 정식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과 '위원'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데 사용해도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위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 간사(김승원) 인사

○위원장 정청래 간사로 선임되신 김승원 위원님께 축하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우선 비상한 시기에 간사로 선임되어 어느 때보다도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단독 개회에 대해서 간사로서 우선 국민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여야가 함께하는 22대 국회 법사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이렇게 22대 법사위가 출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편 총선의 민의를 외면하며 국회의원 책무까지도 놓아 버린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절박한 국민의 삶을 앞에 두고 국민의힘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절박한 국민을 버려 두고 여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하기만을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회의장에 들어오십시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법사위 회의장입니다.

국민의 절박함에, 절박한 삶에,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22대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간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국회 법사위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셔서 조속히 간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신 조국혁신당 소속의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8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법안 심사를 위하여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와 동일하게 고유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총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별 소위원 정수 및 교섭단체를 포함한 교섭단체별 소위원회 정수 또한 제21대 국회 후반기와 동일하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배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은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의 말씀해 주시지요.

○박은정 위원 지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8명을 배정하시면 비율에 따른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4.54인, 국민의힘 3.11인,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0.56인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배정 가능 인원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0.02%가 더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 법안심사제1소위에 저를 배정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제1소위에서 검사정원법을, 200명을 증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합의해서 1소위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법안은 실제로 나중에 폐기가 됐습니다. 공판검사 증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에서 검사 증원을 하겠다는, 수사검사를 더 늘리려는 법안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1소위의 심사를 제대로 하실 것이지만 법안심사제1소위에 조국혁신당인 저를 배정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인을 배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수,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박은정 위원 정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비교섭단체 뜻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조국혁신당을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1소위, 2소위 아니면 청원소위, 예결소위 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소위만 얘기하는 겁니까?

○박은정 위원 1소위의 주요 법안들,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하는 검찰개혁 입법들, 제가 개원 첫날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등에 대해서 제가 1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1소위에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제는 제가 제안한 대로 하자고 해서 흔쾌히 동의를 하셨는데 중간에 생각이 바뀐 것도 존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들 숫자 계산과 박은정 위원님의 계산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22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제정 법안으로서 6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은정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박은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위원장 정청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3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수사 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사 임명부터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규정하였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3인, 파견검사 20인, 특별수사관 40인, 파견공무원 40인으로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 큰데 이는 수사 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수사기간은 70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판기간은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래 박성재 법무부장관님께서 출석하셔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하셨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께서는 왜 불출석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불출석하겠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다음 회의까지 소명서를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석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인사말씀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22대 국회 첫 번째 법사위원회 개최되는 귀한 자리에서 인사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다종다양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소송의 홍수 속에서 저희들이 일상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업적을 많이 쌓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법부도 비록 날로 심해지는 법관의 고령화라든지 법관 수의 부족으로 한계상황에 이르기는 했지만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장경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장경태 위원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렇게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치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라도 국민의힘 또 집권 여당의 위원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좀 강력하게 위원장께서 지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불출석한 상태로 저희가 상임위를, 전체회의를 그리고 또 22대 국회 법사위 첫 개회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관증인을 비롯한 증인 출석을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을 하든 법무부장관이 법치를 정말 지켜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좀 위원장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법안,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바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무부장관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선이 있었고 새로 22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 일단 여당 위원들이 무책임하게 안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도 유감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한편 이렇게 중요한 법을 저희가 논의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안 온 이유가 혹시 행정실에 접수된 게 있나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회신을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저희 의원실에서 오늘 법무부장관 일정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는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바쁜 이유도 없고. 그런데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까 총선 민심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だ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더 특별하게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토론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셔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손 드신 전현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전현희 위원** 먼저 오늘 채 해병 특검법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주무부처인 법무부장관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리지만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 위헌적인 입법으로부터 헌법의 보호라는 거부권 제도의 목적 그리고 헌법 제40조의 국회 중심 입법권 그리고 권력분립 등의 헌법의 기본원리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교과서에 적혀 있는 일반론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동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로 논의되는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보지 않아서 다음에 조금 더 검토하고 혹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공직자들의 공적인 이런 행위에는 반드시 공익을 우선해서 추구해야 되고 사익은 자제하는 그런 공공성의 원칙 적용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로 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이해충돌금지원칙이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역시 일반론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현희 위원** 일반론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전현희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 최근에 대한 법에 대해서 무더기로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사이에는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무시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또 실제로 이런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헌법이나 법률 이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역시 제가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전현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냥 사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이론이 있다,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쭙고 있거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일반론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전현희 위원** 이해충돌금지원칙이 헌법상 내재적 한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부분은 일반론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해병대 순직 사건의 경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 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그 측근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이첩을 막았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그러면 이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만약에 대통령실로 가게 되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것은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어떤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것은 검토할 사안이 아니고요. 헌법상의 이론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 사안이 그 내재적 한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답변하기가 곤란하신가요?

사법은 독립된 기관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처장님께서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이해충돌 사안으로 거부권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재적 한계가 있다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특검법을 통해서 만약에 입법화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건화가 될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처장 지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현희 위원** 처장이 아닌 법관으로서, 법의 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른 그런 견해는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그런 사건을 다룰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토론하고 자기 의견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박은정 위원** 한 달 뒤인 7월 19일이면 채수근 해병대원이 사망한 지 벌써 1주기가 된다는 어머니의 호소를 오늘 접했습니다. 왜 그 혼한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았느냐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온 국민이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해병대까지 자원 입대한 건강한 청년이 왜 죽음에 이르러야 했는지 진실을 알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핵심 책임자들과 윤석열 대통령만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추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통화 내역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8월 3일과 4일 통화기록입니다. 8월 3일 14시 45분 07071로 시작되는 이 전화는 확인해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지난 총선에 용인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석 씨입니다. 용인병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단수공천된 것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고 역시 윤석열 사단은 경선 없이 전략공천된다는 사례를 보여 주신 분입니다.

육사 39기 고석 씨는 국방부와 합참 등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검찰단장인 김동혁과 고석은 같은 육사와 군법무관 출신으로 끈끈한 선후배 사이를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그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은 최근 JTBC 보도에서 나왔듯이 국방부조사본부가 최종 보고서에서 임성근을 빼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넘긴 사건의 회수를 지시한 당사자입니다. 또한 8월 30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이며 군법무관인 이 모 중령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요직에 근무 중인데 고석, 김동혁, 이 모 중령 등 육사와 군법무관 출신들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삼인방입니다.

공수처가 이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종섭과 통화했던 고석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종섭과 고석, 김동혁 그리고 윤석열의 4자 통화 내역이 확인된다면 격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의 핵심을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특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정말 사법행정의 핵심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또 여러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의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국민이 보시기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도 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추락된 부분을 염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경태 위원 같은 지법에서 유사한 사건 또 동일한 인물에 대한 판단 근거가 바뀌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판사님들의 어떤 재량권과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은 충분히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인물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이렇게 바뀐다면 과연 국민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격무에 의해서 많은 법관의 숫자가 부족하고 노령화되고 있다고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저는 수원지법의 재판 결과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던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도 안부수 씨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서 실형을 선고하는데 이후에 어떤 모 기업의 CEO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혐의가 없다 이렇게 같은 지법에서 같은 사건과 같은 인물에 대한 평가가 하나는 주가조작이고 하나는 주가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흔한 일입니까,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사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법관으로서 당연히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으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국가기관의 판단들이 참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청탁 금지의 대상이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직관적으로 혹은 법률가로서 기본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처장님의 배우자께서, 법원 재판과 관련된 청탁을 부탁하면서 300만 원여 상당의 물품을 건넸다라고 하면 그것은—뇌물죄는 성립 안 하겠지요, 공무원은 아니니까—그러면 청탁이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당연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지 즉시 반환하는 게 법률적으로 맞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만약 처장님의 부인이 정말 잘 모르고 가져왔다 그러면 이거 인지한 즉시 바로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처장님 정도 되시면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 재판해 본 결과 다양한 경우,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떠한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최소한 160일 이상을 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정도 되시면. 그러면 처장님께서 자택에 반환용 창고를 두시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순직 수사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수사 외압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보통 구속수사 요건이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활용해서 법무부장관이 출국 금지를 해지하고 외교부가 국민의 예산과 세금으로 범죄혐의자를 외국으로 도피시키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대한민국에서 법치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법치행정은 물론 법무부장관이 합니다만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쳐장님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기는 어려우시겠지요?

그리면 보통 이 수사 외압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경호처장, 행정안전부장관 또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이 사건 당사자와 계속적으로 통화했다면 이런 사건들을 수사 외압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사건을 수사 외압이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쳐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주 공정한 재판이 매우 중요하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어떤 사건이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할 거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부디 이 사건은 특검이 잘 수사해 오면 법원행정처에서 좀 각별하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우선 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 위원장님, 오늘같이 22대 국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법사위에서 첫 회의를 열어요. 그런데 여기에 법무부장관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요. 법무부장관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원회도 그렇고 저희가 법무부장관이 이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국민이 투표해서 4년에 한 번 총선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법사위를 여는데 국민의 월급을 받는 법무부장관이 안 나온다, 이것 법무부장관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회께서 우리 법사위원들의, 아니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음 회의도 또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보이콧하고 있지만 여당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들어와야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여당 사람들도 서로 들어가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법무부장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혹시 오지 않더라도 장관들이 오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이 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에 대한 조치가 준비되어 있는지 법사위원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무부장관이 불출석하겠다는 말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도 행정실로 그냥 통보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국민의 농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의 욕을 먹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 눈치 보기 인지 아니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가 아닌지 아니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국회 무시인지 이것은 나중에 다 자업자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의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저도 왜 안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거나 전달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대단하십니다. 저도 앞으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권능을 국민이 주셨어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몇 석인지, 약 192석입니다. 약 192석의 범야권에게 국민이 표를 주셨고 국회로 보내 주셨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은 약 108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판단을 해 주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왜 국민이 그렇게 우리에게 표를 주셨는지, 아니 더 많은 의석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국민의 힘이 우는 소리를 하도 해서 표가 그나마 조금 준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민심은 무엇인지,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국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참 높으신 분이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참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높은 사람은 바로 국민입니다. 왜? 국민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이 아프지 말고 국민이 힘들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한 특검법이 상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그리고 또 법원행정처가 와야 하는 것이 국회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법을 어겼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하기 어렵겠지만 속으로 동의하시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이 군대 다녀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군대 갈 때부터 걱정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군대에서는 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성장해서 왔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각오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특별히 해병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더 합니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물에 빠진 시신을 찾아야 된다며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왜 구명조끼도 입하지 않았는지, 그날 물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었는지, 물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안 된다고 대대장이 수도 없이 보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나온 정황으로는 임성근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장면 사진 좋아’라며 카톡을 날렸어요. 언론에 이런 장면이 보도됐어요. ‘아주 보기 좋아’라고 날렸어요. 그리고 ‘수풀을 헤치고 수색하는 사람들은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돼’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대대장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도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 채수근이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사단장이 처벌받아야 되지요. 그 중간에 있던 책임자들도 처벌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금방 다 드러난 거예요.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 있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아, 내가 가서 보려 갈 텐데’ 그랬더니 ‘그러면 물에 있는 걸 보시려면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한 수사단장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듣는 항명수괴죄에 걸려서 떡하니 수사 앞뒤가 바뀌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로 인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은 항명수괴죄가 되고 그리고 경찰로 이첩하려고 했던 그 수사기록들이 모두 회수되고, 이게 한 명에게 모입니다. 대통령의 격노, 그러더니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격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자들한테.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통화기록에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것도 공수처가 꺼내지도 못한 기록을 변호사가 통화기록을 요구했고 사실 조회해서,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세 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방부로 다시 그 수사기록들이 회수됩니다. 그러면 그 정점에 누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길어졌는데 조금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빨리 끝내시지요.

1분 더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왜 사단장을 구하려고 할까? 사단장에게 책임지어지면 사단장도 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격노했어요. 수사가 방해됐어요. 수사가 권력에 의해 방해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대답하셔야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수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가 대통령 말에 의해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국정농단이지요. 그건 국정농단입니다. 대통령이 개입한 걸 공수처가 열심히 밝혀는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농단을 밝혀내기 위해서 특검법이 발의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잘 살펴보시고 정의를 위해서 입장을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나중에 여쭤본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행정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결석생이 많으면 출석생이 혼나게 돼 있는데 원래 결석하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착하게 출석하신 우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한테 마치 질타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마치 질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주로 토론과 주장 위주로 하시고 꼭 여쭤보실 것만 좀 질문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김용민 위원** 토론에 앞서 아까 법무부장관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검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는 방식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그 점은 회의 말미에 저희가 다음 회의 출석의 건을 의결하려고 하니까요 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감사합니다.

처장님,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거부권은 어떤 때 행사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때는 구두로 다시 한번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반대로 좀 질문드릴게요.

여당이 표결에 불참해서 야당만 표결에 참석한 법률안, 그래서 통과된 법률안 이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같은 기회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왕 말씀하신 김에 대통령 혹은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준비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소수 여당이 다수의 야당에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능한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

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 그 부분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시겠지만 그래도 답변 주세요, 다음 기회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은 잘 알……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사항인지 아닌지도 포함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법원이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추상적 규범통제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 규범통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원칙이 없다, 답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이 자리에서 구두로 답변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면 차라리 서면답변까지도 괜찮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입장을 정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 답변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군사법원법이 2021년 9월 24일 날 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때 개정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군인의 사망사건일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고 일반 법원으로 관할권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다시 말해서 군인이 사망한 사건은 군검찰이 수사할 수 없고 일반 경찰 혹은 검찰이, 일반 수사기관이,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은 한번 찾아보고 제가, 같은 취지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처장님, 이런 정도는 그냥 저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테니 답변을 그 때는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군사법원법의 규정은 명확합니다. 보면 2조 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민간 법원이,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하셨으니까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채 해병 사건은 군검찰이 아니라 일반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마찬가지로 그 법률에 따라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 법의 규정에는 아까 말씀, 앞에 전제하신 그 부분은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고요.

김용민 위원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수사는 경찰이나 또는 검찰에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영역 침범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김용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채 상병이 사망, 순직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군검찰이 조사, 수사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경찰로 넘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 법원에서 당연히 재판하는 거잖아요, 법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그것을 묻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말씀하신 그 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유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 법률적인 지식과 고매한 인품으로 대법관까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에서 이것은 군사법원에서 할 게 아니고 일반 법원에서 해야 된다. 군검찰에서 조사,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찰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잘못됐습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왜 말씀을 못 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번에 특검법에도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 일반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릴 수는 있고요.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혹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더 정합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우리가 백 보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 상황이므로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라든가 ‘재판 중이므로 곤란합니다’ 이런 것은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백번 양보해서 이해의 소지는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법조문에 나와 있는 자구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않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김승원 위원** 오늘 간사로 선임된 첫날인데 지금 전면에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 불참하시고 특히나 오늘 상정된 법안의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장관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하면서 그래도 간사로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장관의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 질의를 간사인 제가 생략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기사가 떴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이 주도한 상임위에 불참하고 단독 처리 법안은 거부권을 견의할 것을 재확인했다라는 기사가 또 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채 상병 특검법만큼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매몰차게 거부권 행사 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께서 국민들에게 남기신 편지인데요. 한번 처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고 다음번 우리에게 답변 주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채수근 엄마입니다. 지금까지도 멀리 현충원까지 오셔서 수근이를 찾아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 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할 것 같아서 몇 글자 적어 봅니다’.

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군대를 보냈는데 휴가 한 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 식사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 버렸네요. 누가 이 쓰라린 마음을 알까요?’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을 받을 때 몇 번 강습한 게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이 슬픔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돌아올 것만 같은 아들!

국방장관님 등 관계 당국에게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저희 아들 희생의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 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1일 고 채수근 엄마 올립'.

어쨌건 처장님도 법조인이시고 저도 법률로써 생계를 이어 가는 직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간곡한 어머니의 심정을 살펴 주셔서 오늘 약속했던 다음번 답변 꼭 정확하게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박지원입니다.

저는 비법조인으로서 3대에 걸쳐서 법사위원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관계 장관인 법무부장관이 안 나왔고 또 법원은 사실 검찰의 기소, 공소장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12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오늘 법원행정처장님처럼 무책임한 답변을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준비를 잘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우리가 채 상병 특검을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촉박하게, 거부권 행사를 해서 재입법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채 상병 어머님이 보낸 편지에도 나타났지만 이 사건이 난 게 1년이 돼 갑니다.

행정처장님, 통화기록은 관계 통신사에서 1년씩 보관을 하지요? 모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1년씩 보관하는데 대통령께서 우즈베크에 가 있는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세 번 했다, 그것도 개인 핸드폰으로 했다 이것은 중요한 안보 문제기도 하지만 우즈베크는 과거 소련 연방국가이고 지금도 북한 대사관도 함께 있습니다.

국제전화는 모두 도청을 하는 게, 감청을 하는 게 국제적 관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그 통화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우리 민주당에서, 언론에서 제시를 하니까 통화는 했지만 위법은 없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우즈베크의 통화 사실은 우즈베크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다른 나라도 다 도청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들도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도가 넘는, 범위에 어긋나는 그런 질문도 있지만 이런 절박함을 처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재판 중이다, 뭐가 아니라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처장님께 법사위원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잘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분?

이건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여기 이 법의 주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 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사건 은폐·축소에 관여했느냐, 특히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했느냐 이게 핵심인 사안이고 국민들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국방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우리 국가를 유지·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국가의 부름에 응해서 청춘을 담보로 국방의 의무에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 청년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장병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 상병이 억울하게 사망을 했는데 당연히 군 통수권자는 왜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군 통수권자인 국가원수의 의무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까지가 국방의 의무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다 또는 우리가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실 누군가가 또는 혹시 대통령이 이 사건의 은폐에 관여돼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둥인 국방의 의무를 대통령이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채 해병 특검법은 국방의 의무를 다시 세우는 데, 우리 청년들한테 국방의 의무에 응하라고 국가가 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처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 통수권자의 장병 보호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에 들어간다는 제 생각이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처장님 말씀대로, 확인대로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이 의혹의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면 이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위반한,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법에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통신사실확인 보관기간이 1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은 통신회사들이 1년입니다. 그런데 채 해병이 사망한 지가 작년 7월 19일이니까 올 7월 19일부터 1년이 다가오면서 그날그날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7일 날 제가 제안을 해서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라는 촉구서를 발표했고 또 공수처에 접수까지 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가장 핵심 증거인 이 의혹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입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통과해서 특검법이, 특검이 가동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조사가 망설되는 그런 사태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마디 전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의원들이 이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 뜻을……

1분만……

○위원장 정청래 1분 더 드리세요.

○**이건태 위원** 그 뜻을 저희 위원회가 받아서 저희 위원회의 결의로, 결의안으로 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라는 그런 결의안을 추진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건 간사님께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실 분?

이성윤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이성윤 위원** 전주을 이성윤입니다.

처장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재판을 많이 해 보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재판하는 사건 중에 예를 들어서 본인에, 법관 본인에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법관의 아내에 관련된 범죄사실이 기재된 이런 재판이 들어 왔다, 재판을 맡게 됐다면 그때 법관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보통 회피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것 맡으면 안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저는 이 채 해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 그 이전부터 대통령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졌지만 이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본인 특검이라고 확신합니다.

직권남용의 범위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제삼자,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직권을 가탁하여, 직권을 평계로 행사했을 때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거부권 행사 결과 국회에서 재의결도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과 본인의 아내가 관련된 비리에 관한 수사는 모두 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국민들께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라고 통과시켜 준 법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비리에 관련된 재판을 하거나 스스로 아내가 관련된 재판을 한 셈이 된 것입니다. 내재적 한계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아내에 대한 이 법은 반드시 특검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승원 간사님께서 전북의 아들 채 상병에 대해서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그 호소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정권, 윤석열 정권, 사람이 죽은 이태원 참사 사건, 오송 사건, 채 상병 사건, 왜 그렇게 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용산은 그렇게 진실을 숨기려하고 국힘은 왜 그 거수기 노릇을 하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채 상병 특검이 거부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연히 가야 됩니다. 반드시 채 상병 특검을 통과시켜서 국민들 앞에 얼마나 생명이 귀중한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저희들 산 자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신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박균택 위원님, 첫 번째 하시는 건가요?

○**박균택 위원** 예, 저는 토론보다는 자료제출 요청하면서 관련된 질문으로……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저한테 먼저 어떤 건지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셔야지.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무슨 발언……

○**박균택 위원** 자료제출 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박균택 위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북한 측에 800만 불을 제공했다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800만 불을 쌍방울과 북한과의 관계를 넘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관련됐다는 어떤 사건으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상대로 술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이화영·김성태의 출정기록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우리 법사위의 명의로 요청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있잖아요, 이따가 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지금 법원에게 요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균택 위원** 법원에게도 또 요구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있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그 자료 요청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그건 이따 하시고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처장님에게……

그러면 그때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따가 자료제출 요구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따로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한 채 상병과 또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하와 우주가 눈감은 것과 똑같은 고통일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 눈물을 닦아 줘야 될 책무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외면하거나 짓밟거나 때로는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해서 잘 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고 그리고 찬성·지지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아마 앉아 계시는 법원

행정처장님도 대법관을 떠나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표현은 잘 자유롭게 못 하시더라도 그러한 심정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라도 더 와서 설명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말씀드려야 될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21대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그런 행태, 태도의 또 다른 표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윤석열 정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오늘 불출석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또한 직무를 성실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 의결로, 사실 소위원회로 회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에서 좀 더 심도 깊게 그리고 또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위 구성이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소위 구성의 안건을 잠시 보류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결론을 맺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26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2항 소위 구성의 건은 상정이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1·2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청원소위원회 선임은 하지 않고 일단 숫자, 정수만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1소위, 2소위, 청원소위, 예결산기금소위에 배치되셔서 활동을 왕성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1대 국회 후반기와 동일하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직 소위원회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소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법안 심사를 위하여 각 교섭단체에서는 국회법 제48조제1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 6월 13일까지 소위 위원 선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위원 명단은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13일까지 소위원회 선임 명단을 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동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이나 향후 소위

원장 선출 및 소위 위원 선임이 이루어진 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29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을 추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6월 14일 오전 11시, 소관 기관 중 법무부, 현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간사와 협의하여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해당 기관장인 국무위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국회법 제71조와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

### 4. 국무위원 등 출석요구의 건

(15시30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6월 14일 우리 위원회 회의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출석요구 문건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31분)

○위원장 정청래 6월 14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법 제71조와 제77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

### 5. 자료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요구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를 하시는 자료가 지금 우리가 의결해야 될 안건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은 가시는 것 아닌가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건가?

○위원장 정청래 6개 기관에 다 해도 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은 계속 계신다고요?

○박균택 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는데 위원장실에 잠깐 계시면 바로 끌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박균택 위원님 질의……

○위원장 정청래 질의가 있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말씀하시지요.

자료제출 건은 발언시간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회유·협박했다는 의혹,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김성태·방용철·이화영의 출정기록 그리고 그 세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기록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 출입자 명단—쌍용 직원 포함입니다—그리고 이화영·김성태·방용철 조사 횟수 및 변호인 입회조사 횟수 그리고 세 사람 출정 시에 각 구치소별 출발시간 및 귀소시간에 대한 기록일지 그리고 구치소 출정자 출입문 CCTV 영상자료, 수원지검 해당 검사실 부근의 CCTV 자료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원지검 영상녹화실 카메라 장비와 관련된 기록들 전체를 요구하고 또 수용 관리 및 계호에 관한 법무부의 규칙 그리고 검사실의 출정 관행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최근 5년간 법무부 산하 수용시설 및 수용자 출정 등 현황, 2024년 5월 7일 수원구치소 교도관 회의록, 수원구치소의 2024년 5월 2일부터 7일까지 공문 수발대장 및 법무부·수원지검과 주고받은 통신 내용, 문서 일체 그리고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부지사 5월 7일 장소 변경 접견 불허 사유를 입수한 정보의 취득처, 취득 일시, 취득 내용 및 진위 여부 확인 일시, 확인처 등에 관한 자료 그리고 수원지검의 이화영 전 부지사 별건수사 관련 내용,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수원구치소 자료제출 예정일 및 내용 사본 등을 요구합니다.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 정청래 이 자리에서 꼭 말씀하시지 않아도 6시까지 위원장실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면 취합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기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고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할 자료가 이번 이화영 사건에 대한 판결문 그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처장님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그게 법원에서 국가 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 제한을 걸어 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타당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내용 판결까지는 제가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아마 그런 고려에 의해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검찰에 의해서 국정원 자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은 것들이 다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늘 언론에 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굳이 법원의 재

판장님의 그런 열람 제한을 걸었던 이유가 뭘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런 열람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확인 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

○서영교 위원 국회에서 요구하면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는 따로, 회의 끝나고 6시까지 저희 위원장실로 제출해 주시면 취합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업무보고 대상 기관에 대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내용이나 요구하신 내용들을 제출할 것을 국회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 오후 6시까지 요구하실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고 자료제출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어긋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나중에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자료제출 요구 문건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관은 오늘 요구한 자료를 2024년 6월 13일 오후 2시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관계자,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 ○출석 위원(11인)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정청래

### ○첨가 위원(1인)

조정훈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전문위원 한석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 【보고사항】

###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승원 김용민 박군택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김은혜 박형수 유상범 장동혁 정점식 조정훈	국민의힘	2024. 6. 10.
박은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 ○의안 회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5. 30.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5. 30. 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5. 31.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6. 3.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8)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6. 3.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0)

이상 22건 6월 11일 회부됨